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자원 이용 및 여가활동 비교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기초로*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
Based on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팀 원 박민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소영***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Project planning Bark, min-jeng
Center of Leisure Policy Research
Senior Researcher Yoon, So-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welfare, forty-hour-a-week working system:(FWS) has been an important goal throughout world, and in fact, advanced countries implemented this a long time ago.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inions concerning FWS; some people emphasizes the improvement in life quality, while others point out that

* 본 논문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의 내용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 박민정(park6981@familynet.or.kr)

*** 교신저자 : 윤소영(soyoung@kcti.re.kr)

this measure increases the cost of wages and has limited effectiveness. Thus, discussions about the success of FWS have emerged from diverse perspectives; One thing that should be made clear before debating FWS is that reducing laborers' working hours is already a global trend, and Korea, also intends to extend it.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system and to identify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FW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ual laborers' use of leisure resources and whether they have increased or decreased as a result of FWS.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at the differences in workers' leisure activity with and without the system.

To evaluate and diagnose FWS's political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ers' leisur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s in life quality,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leisure expenses, leisure hours, use of and demand for leisure resources such as leisure spac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FW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2012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s, the study intend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executing FWS and ensuring that the system is in use.

The study results can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general findings of the study, a significant result was shown in terms of the execution of FW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 finding that the execution of FWS work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reassures us of the common notion in society that working environment or life quality may differ in relation to social characteristics.

The utility of weekday leisure hours did not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in terms of weekend leisure hours, laborers practicing FWS had an additional 30 minutes of leisure time than those who did not. Furthermore, regarding leisure expenses, laborers practicing FWS indicated more monthly average leisure expenses or expected leisure expenses. In relation to leisure activity, those working at a company executing FWS engaged in culture and art activiti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that did not. On the other hand,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FWS indicated more hobbies, amusement activities, rest, and other activities than those working at the companies with FWS. In terms of vacation experience,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had more vacation time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on average, they had longer vacations by 1.64 days. Regarding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level,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 FWS indicated higher satisfaction and greater happiness than those working at companies without it.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represent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is paper, and the remainder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more detailed analysis results and suggestions corresponding to them.

Key Words : 주 40시간 근무제(Forty-hour-a-week Working System)
여가자원(Leisure Resources),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I. 서론

주 40시간 근무제(Forty-hour-a-week Working System)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인 것을 주당 40시간을 줄여 연간 근로시간을 2497시간에서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일주일에 8시간 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근로복지 차원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실시되었다.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4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8년, 중국은 1997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독일은 1995년부터 주 35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1982년부터 주 38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었고 그 후 주 36시간 근무가 정착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핵심 역시 장시간 근로의 완화를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분배로 대량실업문제의 극복에 있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실 근로시간이 감소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데 비해, 경영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실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임금비용만 증가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김유선, 2011)

이러한 논점의 차이는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의 효과와 관련된 논문에서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첫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오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둘째,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정과 고용감소를 저지하며, 셋째, 국민소득의 향상과 경제적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노사정 위원회, 1998). 보다 구체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여가활성화는 물론 여가만족감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이철원, 2001; 이상일·유현순, 2004; 심기섭, 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양성인, 2002; 류재숙 외, 2005; 손병준·최윤희, 2004) 궁극적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여가-관광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점이다(김동호, 1998; 곽한병, 1996; 이상일·유현순, 2004; Daniel, 1971; Kando, 1980; 김재천, 1993; 김형룡·김정목, 2004).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며(Hunt, 1999; Crépon and Kramarz, 2002; Kawaguchi, Naito and Yokoyama, 2008; 안주엽, 이규용, 2001;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단순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수동적 여가행태의 연장으로 이어질 뿐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하기 보다는 TV 시청, 낮잠 등으로 소일하는 코쿰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김민관, 2004;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2001; 신성희, 2004)이다.

이처럼 주 40시간 근무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실제 주40시간근무제 실시비율이 2010년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어 2012년에는 36.4%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따라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유무에 따라 증가 혹은 증감된 여가자원의 이용실태와 여가활동의 차이분석에 대한 주기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책효과를 근로자의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포함한 여가비용, 여가공간 등의 여가자원의 이용실태 및 요구도와 여가활동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여가만족감과 행복수준의 차이분석을 통해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도적 실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3년 1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와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행된 것으로만 15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만족도 분석을 통한 국민여가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여가자원의 이용, 여가활동 참여실태, 여가생활 만족, 관련 정책의 중요도 파악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이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금 근로자 1533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30.6%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의 연령비를 살펴보면, 10대 13명(0.8%), 20대 301명(19.6%), 30대 492명(32.0%), 40대 399명(26.0%), 50대 247명(16.1%), 60대 69명(4.5%), 70대 이상 12명(0.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981명(64%), 여자 552명(36%)이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10일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1:1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의 논의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

〈표 1〉 주요용어의 정의

주요용어	정의
여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사회성 여가활동	사회 공헌적 가치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여가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드는 데 주어진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함. 자원봉사, 방법활동, 마을청소, 지역행사 도우미, 재해지역 복구, 재능 기부 등이 이에 해당
동호회활동	여가활동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며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포괄적인 모임을 의미하며 문화예술동호회, 생활체육동호회, 취미오락동호회 등이 이에 해당
휴가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사업장(직장) 또는 학교를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것으로 하계휴가, 연차휴가 등을 의미하며, 자영업자, 농어업종사자, 주부, 무직자 등은 가족단위의 휴가나 스스로 결정하여 이틀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경우가 휴가에 해당
연휴	연휴는 공휴일이 이틀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추석(2011. 9. 10-13), 설(2012. 1. 22-24) 또는 법정공휴일 등이 2~3일 지속되는 휴일이 이에 해당
문화예술관람활동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동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 공연, 창작활동, 미술, 연주 등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스포츠관람활동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를 관람(구경만)하는 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심신의 단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
관광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활동(상주목적이거나 영리추구 목적은 제외)으로 낯선 지역의 풍경·풍습·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해보는 일을 일컫음
취미오락활동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고 자유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

구대상자의 여가자원 이용실태와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여가 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일-휴일 여가시간 활용실태, 평일-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평일-휴일 희망여가시간, 월평균 여가비용, 여가 비용 충분도, 희망여가비용, 참여 동호회 참여 만

족도, 동호회 1회 참여시간, 휴가일수, 여가생활 만족도, 주관적 행복수준을 차이분석(T-Test)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순위, 가장 만족스런 여가 활동 유형,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유형, 동호회 참여경험, 휴가경험, 이용한 여가공간, 희망 여가공간,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금 근로자 1533명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우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금 근로자 1533명 중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중인 근무자는 558명으로 연구대상자의 36.4%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의 33.9%와 여성근로자의 40.9%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중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중인 전체 근로자 559명중에서 남자는 60%, 여자는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근무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었으나, 40.4%에 그쳤다. 10대의 경우 미실시자가 93.1%로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 미실시 근로자가 가장 낮은 것(55.8%)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에 있어서 월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미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88.7%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에 따라서 근로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의 경우 55.2%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권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권의 경우 19.2%만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권역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유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자원 이용실태

여가 자원이란 여가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제반자원이 되는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의 자원이다(이미연, 2004). 이때의 여가자원은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의 사용자에게 유용도에 따라 주관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국민 여가활동조사’ 결과에서의 여가자원 분류기준을 근거하여 ‘여가시간’, ‘여가비용’은 여가자원으로 정의하고 여가시설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실태에서 여가공간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시간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휴일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 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실태와 충분도, 희망여가시간을 살펴보았다. 우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평일-휴일여가시간 활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평일여가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휴일여가시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휴일여가시간이 333.6299분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약 30분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로 하여금 실제 응답자가 보내는 여가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이는 아래의 여

〈표 2〉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33, 단위:명)

특성	구분	전체 N(%)	실시 N(%)	미실시 N(%)
성별	남자	981(64.0%)	333 (33.9%)	648(66.1%)
	여자	552(36.0%)	226 (40.9%)	326(59.1%)
연령	10대	13(0.8%)	1 (6.9%)	12(93.1%)
	20대	301(19.6%)	98 (32.5%)	203(67.5%)
	30대	492(32.1%)	199 (40.4%)	293(59.6%)
	40대	399(26.0%)	138 (34.5%)	261(65.5%)
	50대	247(16.1%)	99 (39.9%)	148(60.1%)
	60대	69(4.5%)	21(30.9%)	48(69.1%)
	70세이상	12(0.8%)	3 (25.1%)	9(74.9%)
최종학력	초졸이하	27(1.8%)	9 (32.2%)	18(67.8%)
	중졸	66(4.3%)	16(24%)	50(76%)
	고졸	537(35.0%)	134(25%)	403(75%)
	대재이상	902(58.8%)	399(44.2%)	503(55.8%)
혼인상태	미혼	434(28.3%)	149(34.3%)	285(65.7%)
	기혼	1,045(68.2%)	391(37.4%)	654(62.6%)
	이혼/사별	53(3.5%)	18 (34.6%)	35(65.4%)
가구주여부	가구주	800(52.2%)	280(35%)	520(65%)
	가구주아님	732(47.7%)	277(37.9%)	455(62.1%)
가구원수	1인	58(3.8%)	19 (32.8%)	39(67.2%)
	2인	135(8.8%)	37 (27.7%)	98(72.3%)
	3인	341(22.2%)	131(38.3%)	210(61.7%)
	4인	905(59.0%)	325(35.9%)	580(64.1%)
	5인이상	93(6.1%)	46 (49.1%)	47(50.9%)
	100만원미만	17(1.1%)	2 (11.3%)	15(88.7%)
가구소득	100-200만원미만	87(5.7%)	20(23.1%)	67(76.9%)
	200-300만원미만	232(15.1%)	74(31.8%)	158(68.2%)
	300-400만원미만	432(28.2%)	151(34.9%)	281(65.1%)
	400-500만원미만	399(26.0%)	136(34.1%)	263(65.9%)
	500만원이상	364(23.7%)	175(48%)	189(52%)
권역	수도권	719(46.9%)	252(35%)	467(65%)
	강원/제주권	52(3.4%)	21 (40%)	31(60%)
	충청권	241(15.7%)	100 (41.4%)	141(58.6%)
	호남권	159(10.4%)	88 (55.2%)	71(44.8%)
	대경권	118(7.7%)	51 (43.2%)	67(56.8%)
	동남권	243(15.9%)	47 (19.2%)	196(80.8%)
	대도시	783(51.1%)	328(41.9%)	455(58.1%)
지역규모	중소도시	550(35.9%)	155(28.2%)	395(71.8%)
	읍/면지역	200(13.0%)	75 (37.5%)	125(62.5%)
	전체	1533(100%)	558(36.4%)	975(63.6%)

결측치 포함

〈표 3〉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평일-휴일 여가시간 활용실태

(N=1,533, 단위:분)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일여가시간	159.5108	77.08177	163.8379	68.91064	-1.132
휴일여가시간	333.6299	157.48984	299.3068	132.67529	4.546***

***p<.001

〈표 4〉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평일-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N=1,533)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일여가시간충분도	2.70	.886	2.63	.886	1.573
휴일여가시간충분도	3.17	.882	3.02	.901	3.198**

**p<.01

〈표 5〉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평일-휴일 희망여가시간

(N=1,533, 단위:분)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일희망여가시간	232.9862	82.28071	247.8446	80.38863	-3.451**
휴일희망여가시간	393.8454	143.82986	384.3027	133.81506	1.307

**p<.01

가시간 충분도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는데, <표 4>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이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의 충분정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여가시간 충분도는 여가시간 활용실태의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평일-휴일 여가시간 충분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일여가시간충분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휴일여가시간충분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 비해 휴일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희망여가시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해보았다(<표 5>).

휴일희망여가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일희망여가시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평일여가시간을 원하였다.

2)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비용

앞서 살펴본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비용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월평균 여가비용과 여가비용 충분도, 그리고 희망여가비용에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비용의 경우 직접 금액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충분도의 경우 ‘매우 충분하다’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까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6>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비용관련 분석이다.

우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월평균 여가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월평균여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비용 충분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한 달

평균 희망여가비용의 차이분석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희망여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 평균 여가비용이나 희망여가비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고소득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비율이 높았다는 것과 연계에서 분석해보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은 비단 여가시간의 증가만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생활 전반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여가활동 참여실태

여가활동 참여실태의 경우 우선 개별 주여가 활동을 유형별로 묶어서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관광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문화 예술 참여활동으로 나누었다. 다음은 휴가활동, 여가공간으로 연구대상자의 여가활동 참여실태의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분석만을 본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표 6>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비용

(N=1,533, 단위: 원)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여가비용	136261.280	5769.561	119286.115	3821.314	3.256**
월평균 여가비용 충분도	2.75	.799	2.71	.818	.367
희망여가비용	255575.83	182653.657	224688.58	144620.879	3.647***

**p<.01

1)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경우 여가활동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가 개념과 동일하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제시되었다(임변장·정영린, 1995; 류재숙 외, 2005). 김정근은 여가유형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여가활동의 주체와 객체에 따른 분류, 여가활동의 양면성에 의한 이원적 분류, Ragheb의 분류가 그것이다(Ragheb, 1980; 김정근, 1998; 공기열, 2005).

여가의 주체와 객체에 의한 분류법은 정부 및 연구기관의 정책개발과 전략 수집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가활동의 양면성에 따른 이원적 분류는 전문성의 수준이 낮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리고 Ragheb의 분류기준은 전문적인 학술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정, 2006).

여가활동의 분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 소분류

로써 개별 주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묶어서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관광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으로 총 8가지 분류로 나누었으나 연구결과에 의미있는 변수로는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휴식 및 기타활동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표 7> 참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주여가활동 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이 82.3%, 스포츠활동이 11.6%, 문화예술활동이 4.1%, 관광활동 2.0%로 나타났으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이 83.8%, 스포츠활동이 10.6%, 문화예술활동이 4.0%, 관광활동 1.6%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분석이다 (<표 8> 참고).

<표 7>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X ² 값
문화예술활동	23명(4.1%)	39명(4.0%)	0.688
스포츠활동	65명(11.6%)	103명(10.6%)	
관광활동	11명(2.0%)	16명(1.6%)	
취미오락휴식 기타활동	459명(82.3%)	815명(83.8%)	

<표 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유형

(N=1,533)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X ² 값
문화예술활동	65명(11.6%)	80명(8.2%)	11.262
스포츠활동	120명(21.5%)	171명(17.5%)	
관광활동	40명(7.2%)	63명(6.5%)	
취미오락휴식 기타활동	333명(59.7%)	661명(67.8%)	

*p<.05

〈표 9〉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유형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문화예술활동	124명(22.2%)	154명(15.8%)
스포츠활동	131명(23.5%)	232명(23.8%)
관광활동	138명(24.7%)	231명(23.7%)
취미오락휴식 기타활동	165명(30.0%)	357명(36.7%)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가장 만족스런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에서 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에서 더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라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유형을 알아보았다(<표 9>참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유형의 1위는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30.0%), 2위는 관광활동(24.7%), 3위는 스포츠활동(23.5%), 4위는 문화예술활동(22.2%)으로 나타났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1위는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36.7%), 2위는 스포츠활동(23.7%), 3위는 관광활동(23.7%), 4위는 문화예술활동(15.8%)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문화예술활동의 빈도가 더 많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의 빈도가 더 많았다. 이는 앞서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리어스 레저(Serious Leisure)로 분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실제활동과 욕구를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캐주얼 레저(Casual Leisure)로 분류 할 수 있는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에 대한 실제활동과 욕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단순한 여가시간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시간에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즉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욕구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사회에서의 여가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2) 휴가활용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사업장(직장) 또는 학교를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것으로 하계휴가, 연차휴가 등을 의미하며, 응답자에게 1년 동안 휴가를 가진 적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휴가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표 10〉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휴가경험

(N=1,533)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X ² 값
		有(n=558)	無(n=974)	
휴가경험	있음	465(83.3%)	745(76.4%)	10.228**
	없음	93(16.7%)	230(23.6%)	

**p<.01

〈표 1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휴가일수

(N=1,533)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t값
	有(n=558)		無(n=97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휴가일수	6.29	4.861	4.65	2.661	7.536***

***p<.001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휴가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휴가일수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휴가일수가 평균 1.6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가의 활용 역시 비 시행 근로자의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여가공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이용한 여가공간¹⁾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이용한 여가공간의 1위는 식당(12.3%), 2위는 산(9.8%), 3위는 영화관(8.0%)으로 나타났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1위는 식당(16.2%), 2위는 근린공원(10.1%), 3위는 산(7.2%)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희망여가공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희망여가공간의 1위는 산(12.2%), 2위는 영화관(8.1%), 3위는 공연

1) 여가공간에 대한 선택지는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센터,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대형서점,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평생학습관, 학원, 노래방, PC방, 만화방, 오락장, 클럽, 찜질방, 목욕탕, 미용관리실, 쇼핑몰, 커피숍, 대형마트, 식당,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농어촌종합체육시설, 복합체육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종교시설, 기타실내공간, 학교운동장, 리조트, 시크장, 골프장,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하천변체육공원, 유원지, 테마파크, 역사문화유적지, 동물원, 식물원, 해수욕장, 농산어촌체험장, 삼림욕장, 산, 복합문화거리, 경마 경쟁 경륜장 낚시터, 재래시장, 아파트 내 공터, 기타실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응답이 많았던 3개의 순위를 표로 제시하였다.

〈표 12〉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이용한 여가공간

변수	(N=1,533)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여가공간 1순위	식당: 69명(12.3%)	식당: 159명(16.2%)
여가공간 2순위	산: 55명(9.8%)	근린공원: 99명(10.1%)
여가공간 3순위	영화관: 45명(8.0%)	산: 71명(7.2%)

〈표 13〉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희망 여가공간

변수	(N=1,533)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희망여가공간 1순위	산: 68명(12.2%)	산: 70명(7.2%)
희망여가공간 2순위	영화관: 45명(8.1%)	역사문화유적지: 55명(5.6%)
희망여가공간 3순위	공연장: 38명(6.8%)	영화관: 51명(5.2%)

〈표 14〉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생활 만족도

변수	(N=1,533)				t값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가생활만족도	2.75	.477	2.49	.610	8.504***

***p<.01

장(6.8%)으로 나타났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1위는 산(7.2%), 2위는 역사문화유적지(5.6%), 3위는 영화관(5.2%)으로 나타났다.

4.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전 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매우 만족-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로 평가한 것으로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주된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21>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와 여가생활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이다. 실제 차이분석에 있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여가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라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이 낮게 나온 다른 이유들을 제외하고²⁾ 시간부족과 경제적인 이유만

2) 통계분석에서 제외된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여가시설 부족, 여가를 함께

〈표 15〉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라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141)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441)	X ² 값
시간이 부족하여	70(49.6%)	257(58.3%)	.045*
경제적 부담때문에	71(50.4%)	184(41.7%)	

*p<.05

〈표 16〉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행복수준

변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有(n=558)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無(n=97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행복수준	6.92	1.476	6.45	1.662	5.569***

***p<.01

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사람만을 가지고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람은 50.4%로 나타난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집단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람이 58.3%로 나타났다.

5.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행복수준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조사결과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가 10점, ‘매우 불행하다’가 1점을 기준으로 하여 10점 척도 기준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

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6.6인 것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높은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1776시간인데 비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이보다 300시간 긴 2090시간이다. OECD회원국 중 연간 총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총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긴 이유를 다른 연구에서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즐길 사람이 없어서, 이전 경험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기타

동양적인 근로문화, 신규 고용보다는 초과 근로를 선호하는 근로시장의 경직성, 여가보다 소독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요일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것과 유급휴가가 수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된 휴가의 사용일수를 적게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다(김승택 외, 2003).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0시간 근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를 2004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행시기의 경우,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이며, 2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2011년 7월부터로 사업장의 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주 40시간 근무제는 점차 확대시행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근로 환경개선과 국민 여가생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시행여부에 따른 여가생활의 실태와 동향을 예의분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책효과를 근로자의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포함한 여가비용, 여가공간 등의 여가자원의 이용실태 및 요구도와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여가만족감과 행복수준의 차이분석을 통해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실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

사’의 결과와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조사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행된 것으로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여가자원의 이용, 여가활동 참여실태, 여가생활 만족, 관련 정책의 중요도 파악 등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이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금 근로자 1533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30.6%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살펴볼만 한 것은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여부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이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 미실시 근로자가 가장 적었으며, 특히 가구소득에 있어서 월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미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88.7%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유무에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유무가 근로환경과 삶의 질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근로환경 및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본 연구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여가자원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자원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가시간의 경우 여가활동실태와 충분도, 희망여가시간을 평일-휴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평일여가시간의 활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휴

일여가시간에 있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비 시행 근로자의 비해서 약 30분가량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가시간 충분도에서도 검증되는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여가시간 충분도는 비 시행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희망여가시간에 있어서는 평일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의 근로가 더 많은 평일 여가시간을 원하였다.

여가비용에 있어서는 실제 여가비용과 희망여가비용, 그리고 여가비용의 충분도를 분석하였으나, 여가비용의 충분도의 경우 통계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용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월평균여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여가비용이 역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 평균 여가비용이나 희망여가비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고소득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비율이 높았다는 것과 연계에서 분석해보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은 비단 여가시간의 증가만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생활 전반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실태의 경우 우선 개별 주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묶어서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관광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으로 나누었다. 다음은 휴가활동, 여가공간으로 연구대상자의 여가활동 참여실태의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분석만을 본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 40

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문화예술활동의 빈도가 더 많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의 빈도가 더 많았다. 이는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리어스 레저(Serious Leisure)로 분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실제 활동과 욕구를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캐주얼 레저(Casual Leisure)로 분류 할 수 있는 취미오락휴식기타활동에 대한 실제활동과 욕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단순한 여가시간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시간에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즉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욕구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사회에서의 여가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다음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휴가활용을 알아본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사업장(직장) 또는 학교를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쉬는 것으로 하계휴가, 연차휴가 등을 의미하며, 응답자에게 1년 동안 휴가를 가진 적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휴가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휴가일 수 또한 평균 1.6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가의 활용역시 비 시행 근로자의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여가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사람만을 가지고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람은 50.4%로 나타난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집단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람이 58.3%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집단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가생활에 있어서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유무에 따른 주관적 행복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6.6인 것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높은 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 40시

간 근무제 시행이 근로자의 행복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방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논지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의 경우 분명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 자체가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한다는 광범위한 조사목적에 기반하여 도출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부터 동일 업종의 근로자로 통제해야 할 것이며, 연구문제 또한 연구대상자에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유무에 의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시행 전 후에 대한 근로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자기고찰에 연구결과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제 시행 전 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삶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유용성 또한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여가활동인 시리어스 레저(Serious Leisure)를 즐기고 원하며, 많은 휴가경험을 가지며, 자신의 여가시간과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행복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와 개성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들(이철원, 2001; 이상일, 유현순, 2004; Ragheb & Griffirh, 1982; Riddick, 1985; Russell, 1987; Kelly et al, 1987; Brown & Frankel, 1993; 김치조, 1994; 김정식, 1996; 이성철, 1996)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여러 측면의 논의가 존재하지만, 국민의 삶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를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요구되며,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행으로 인해 증가한 여가시간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레저(Leisure)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증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유무에 따라 증가 혹은 증감된 여가자원의 이용실태와 여가활동의 차이분석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공기열(2005). 부산시민들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7(1), 63-78.
- 2) 곽한병(1996). 여가활동을 통한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모델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동호(1998). 장교의 여가활동 참여가 직무스트레스 및 업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민관(2004). 시청환경의 변화가 케이블 TV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승택·정진호·최효미(2003). 2003 근로시간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7) 김유선(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37-71.
- 8) 김재천(1993).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정근(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1(2), 222-236.
- 10) 김치조(1994). 여가활동으로서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활동 만족,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의 공변량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14(2), 85-99.
- 11) 김형룡·김정목(2004). 전문대학교직원의 여가활동참여와 조직전념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913-921.
- 12) 노사정위원회(1998). <http://www.lmg.go.kr>
- 13) 류재숙·박연옥·이승곤(200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 관광연구저널, 19(1), 31-47.
- 14) 박수정(2006).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과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5) 손병준·최윤영(2004). 주5일 근무제가 직장인의 여가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965-975.
- 16) 신성희(2004). 금융권 종사자의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용형태 및 경제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심기섭(2004).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생활의 변화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대학병원 사무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안주엽·이규용(2001).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4, 151-170.

- 19) 양성인(2002). 주 5일 근무제가 도시근로자들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미연(2004). 대학생의 여가자원과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이상일·유현순(2004). 주5일 근무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별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7, 153-168.
- 22)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이철원(2001). 여가의 재해석. 서울 : 대한미디어.
- 24) 임번장·정영린(1995). 스포츠 사회학 :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33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92-101.
- 25)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2000). <http://www.nodong.org>
- 2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근로자 여가생활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7)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8) Brown, B. A. & Frankel, B. G.(1993). Activity through the Years: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ociology of Sport Journal*, 10, 1-17.
- 29) Crépon, Bruno & Francis Kramarz.(2002). Employed 40 Hours or Not Employed 39: Lessons from the 1982 Mandatory Reduction of the Workweek.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6), 1355-1389.
- 30) Daniel, J. V.(1971). Faculty Job Satisfac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Athletics. *Urvana Campaign*.
- 31) Hunt, Jennifer.(1999). Has Work-Sharing Worked in German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1), 117-148.
- 32) Kando, T. M.(1980). Leisure and Popular Culture in Transition Philadelphia: *The C. V. Mosby Company*.
- 33) Kawaguchi, Daiji, Hisahiro Naito & Izumi Yokoyama.(2008), Labor Market Responses to Legal Work Hour Reduction: Evidence from Japan.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202.
- 34) Kelly, J. R. & Steinkamp, M.(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s*, 9, 189-199.
- 35) Ragheb, M. G.(1980), Interrelationship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2), 138-149.
- 36) Ragheb, M. G. & Griffith, C. A.(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Life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 37) Riddick, C. C.(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 and Females. *Leisure Sciences*, 7(1), 47-63.
- 38) Russell, R. V.(1987). The Importance of Recreation Satisfaction and Activity Participation to Life Satisfaction of Age-Segregated Retire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4), 273-283.

- 투 고 일 : 2013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0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0월 26일